사천시 고시 제2019-46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승인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승인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9. 2. 19.

사 천 시 장

1.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

○ 승인번호 : 제2019 - 1호

○ 승인연월일 : 2019년 2월 19일

2. 점용ㆍ사용의 목적

○ 산사태 방지 및 토석 유출을 위한 사방사업

3. 점용ㆍ사용의 장소

○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 360 (천)

4.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

○ 면 적 : 58㎡

○ 기 간 : 2019. 2. 19. ~ 2048. 2. 18.

5. 점용ㆍ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

○ 성 명 :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